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재부, 62개 기금 새 회계처리 지침 마련

□ 기재부는 지난 8일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(정부 39개, 민간 23개)에 적용되는 ‘기금 회계처리지침’을 마련함.

- 국가재정법에 따른 62개 기금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나, 기금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의 결산 보고서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 옴.
-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.

□ 이번에 마련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에서는 각 기금간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출연금의 회계처리 근거를 통일하고, 부담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처리, 보증·보험·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등을 제시함.

- 이에 따라 각 기금들은 출연금이 시설물의 신·증설과 같은 자본적 지출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자산 및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될 경우 회계처리시,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직접 반영하게 됨.
- 반면, 출연금이 사업비 보전 등 비용 충당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원본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함.
- 아울러 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,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 증가 또는 감소액을 각각의 비용 및 수익으로 계상토록 함.

□ 재 정부는 이번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높아져 기금간 비교가능성 제고로 기금의 성과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(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,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, 10/8)